

운영규정 개요

1. 기관정보

시 설 명	간호전문노인요양원	시 설 유 형	노인요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장(대표)	이 홍 일	고유번호	1-47210-00174
소 재 지	경북 영주시 문수면 문수로1499번길 85-2		
설치신고일	2018. 12. 5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본 시설의 입소정원은 29명으로, 정원 내 결원 발생 시 입소 가능함
입소대상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
계약규정	입소보호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내용으로는 목적,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해제, 급여비용, 비용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개인정보보호의무, 신원인수인계 원칙 등을 포괄함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 및 제공 서비스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을 시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해지 및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 제54조에 의거, 시설에서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입소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건강진단서(감염병 포함)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5. 입소이용의뢰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한함)

3.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급여내용	본 시설에서는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일상보호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3. 사회적응서비스 4. 가족연계 및 지역복지 서비스 5. 일상생활지원 관련 서비스 6.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
급여비용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8~12%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이용 비용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특별보호 서비스	① 특별보호를 위한 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종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의료서비스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함 1.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①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병원 및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2. 외래병원 방문진료 시 처리절차 ① 입소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자에게 의료기관 방문에 관한 통보 및 동의를 득한 후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전원조치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급여비용 변경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 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시설물 배상	1. 입소자는 본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입소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원이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 확인 후 건강상태 등을 점검해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

7.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본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본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

< 제공급여 서비스>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 활동 지원		간호 및 처치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 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관찰 및 측정(혈압·체중등)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측정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투약 및 주사	경구약 투여 및 도움·확인, 주사준비·투여·정리, 외용제 도포 및 좌약 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머리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슴기, 네브라이저 제공, 산소공급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피부간호	외상처치, 봉대교환, 연고 바르기,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겉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	영양간호	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찰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조작, 욕실 정리	통증간호	온·냉습포 제공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 Finger evacuation 실시, 관장, 장루간호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그 밖의 처치	복막투석,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수혈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의사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뢰 등에 대한 보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 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보기 포함)	시설환경관리	
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린넨 교환
기능회복훈련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실·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기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돈 관리
기본동작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 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세탁물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일상생활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치매관리 지원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견인요법 등	행동 변화 대처	배회·불결행위·폭력행위·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응급서비스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응급상황대처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 연습	기타	
		외출 시 동행	은행, 관공서 등 방문 또는 산책시 부족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동행, 산책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 콜벨 대처

2025년 간호전문노인요양원 입소비용

1. 입소비용 내역

2025년도 입소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기준: 30일/월 기준)

구 분	요양급여 수가		본인부담률별 자부담금(①)			비급여 (②)	입소비용 합계(①+②)			비 고
	1일	30일	20%	12%	8%	식비	20%	12%	8%	
1등급	90,450	2,713,500	542,700	325,620	217,080	171,000	713,700	496,620	388,080	
2등급	83,910	2,517,300	503,460	302,070	201,380		674,460	473,070	372,380	
3~5 등급	79,240	2,377,200	475,440	285,260	190,170		646,440	456,260	361,170	

▶ 본인부담률의 경우 일반 대상자는 20%, 보험료순위 20% 초과~50% 이하 감경 대상자는 12%, 보험료순위 25% 이하 감경 대상자는 8%임.

▷ 상기 입소비용 예시는 30일/월 기준이며, 월별 일수[31일/월, 28일/월]에 따라 다름.

▶ 병원진료(촉탁의 진료 포함)에 따른 진료비 및 약제비는 별도 부담임.

2. 비급여 항목 내역

1) 식사재료비

○ 식재료비 : 1일 3식 5,100원, 153,000원/월(30일)

○ 간식비 : 1일 2회 600원, 18,000원/월(30일)

2) 상급침실 이용료 : 해당사항 없음

3) 이·미용비

○ 시설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별도 부담임

4) 기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별도 부담임

3. 입소비용 보증금은 없음

4. 등급외자 입소 규정

정원 내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해 등급외자 입소가 가능하며, 이때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음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시/군/구청장이 이용을 의뢰한 자
: 727,000원/월

○ 그 외 이용자 : 이용자 본인(또는 보호자)이 전액 부담